

신라 중고기 율령의 정치적 공공성에 관한 시론

김선숙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연구원, 한국고대사 전공

1997-sun@hanmail.net

- I. 머리말
 - II. 중고기 율령의 정치적 공공성
 - III. 율령 반포와 교(教)·법(法)·영(令)의 제정
 - IV. 맷음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8121).

I . 머리말

공공(公共)이란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일인데 공공성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복리에 관계되는 속성 또는 그러한 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제기되고 모색되는 가치이자 현상이다.¹ 그런데 공공성이 추구되고 구현되는 양상은 역사적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념적으로 불교가 지배적이던 사회와 유교 중심의 사회가 지닌 사회적 성격과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논리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²

공공성은 지배와 권력, 국가의 정당성 및 정통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나 바람직한 정치 및 질서에 대한 사고에서 핵심되는 요인이다.³ 물론 현재 널리 알려진 공공성이란 용어와 개념 자체는 서구의 근현대적인 문제의식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널리 알려진 공공성의 개념을 고대사회에 적용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공공성이란 용어와 개념 자체가 근현대 서양에서 정립된 것이라고 해도 오히려 개인 관념의 존재가 미약했던 고대사회에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관념은 한층 더 긴밀한 것이었다. 고대사회에서 행해졌던 제천행사(祭天行事)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공동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성이란 맥락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1 정영훈, 「고대 한국의 정치와 문화 속에서의 공공성」, 『한일 고대사 속의 공공성』, 제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학술발표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2. 12, 9쪽.

2 김석근, 「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공성: 고대 한국에서의 민주적 전통과 그 정치적 합의」, 『양명학』 36(2013), 373~374쪽.

3 정영훈, 「비교공공성 연구의 관점과 제언」, 제2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학술발표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2. 6, 3쪽.

다.⁴ 그렇다고 한다면 근현대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인간사회를 이룬 고대에도 부분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개념이 규정되지 않은 형태의 공공적인 문제의식은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⁵

한편 율령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법제를, 좁게는 수당대(隋唐代)에 완성된 율령격식(律令格式)⁶의 체제를 말한다.⁷ 율령은 처음 중국왕조에서 국가조직(통치제도)의 정비에 의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주변국으로까지 확대된 고대 동아시아의 법체계이다.⁸ 중국의 역대왕조에서는 황제의 교체 때마다 새로운 율령을 제정하고 반포하였고 진대(晋代)의 태시율령(泰始律令)이나 당대(唐代)의 정관율령(貞觀律令)·영휘율령(永徽律令) 등처럼 제정된 시기의 연호를 관칭하는 것이 관례였다.⁹

그런데 중국과 달리 신라에서는 율령이 처음 반포된 법흥왕 7년 이후 제정된 법제도에 연호를 붙여 율령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신라의 경우 율령 도입은 중앙정치제도의 정비보다는 전국을 일원화하는 지배방식을 구축하여 민(民)의 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¹⁰에 두어졌다. 물론 이때 제정된 율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었는지 알

4 김석근, 위의 논문, 374쪽.

5 공공성의 구현여부는 국가의 치란과 흥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삼국을 통일한 신라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고려에 의해 통일되는 과정 역시 공공성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석근, 앞의 논문, 374쪽, 각주 5).

6 『唐六典』 尚書刑部 郎中員外郎條, “凡文法之名有四 一曰律 二曰令 三曰格 四曰式 凡律以正刑定罪 令以設範立制 格以禁違正邪 式以軌物程事”

7 홍승우, 「신라율의 기본성격」, 『한국사론』 50(2004), 1쪽.

8 노진곤, 「신라 율령체계의 발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집(1998), 5~6쪽; 韓鈴和, 「한국 고대의 형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4쪽.

9 山本孝文, 『삼국시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서경문화사, 2006), 24쪽.

10 홍승우,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2009), 217쪽.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기 신라의 율령에서 정치적 공공성을 찾는 작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까지 발표된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신라 중고기가 시작되는 법흥왕대 이후의 율령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과 편목¹¹은 물론이거니와 성격과 운용과정, 모법(母法) 등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고대 문헌과 금석문을 통해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¹²

삼국시대 율령의 성격변화와 이미 규정되어 나타난 민의 존재형태의 변화상을 살펴본 연구도 나온 바 있다.¹³ 그러나 신라가 율령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대외교섭 및 외부로부터 문자의 전래와 활용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은 물론이고 불교의 공인과 함께 신라의 정치적 성장이 두드러지는 시기의 율령의 성립 및 제정 배경 등에 대해 정치적 공공성과 직접 연결시켜 다룬 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¹⁴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이인철, 「新羅律令의 篇目과 그 內容」, 『정신문화연구』 17(1)(1994).

12 韓鈴和, 앞의 논문, 4~11쪽.

13 강봉룡, 「삼국시기의 율령과 ‘民’의 존재형태」, 『한국사연구』 78(1992).

14 최근 한국 정치학계에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한국사 속에서 공공성의 가치나 현상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리하여 공공성의 구현을 정치학의체인 신라의 화백제도와 남당, 백제의 정사암, 고구려의 제가평의회 등과 같은 소통과 합의라는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논문이 나오고, 공공성의 개념을 왕실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백성들과 연관지우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불교가 공공성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해석도 등장하였다(판카즈 모한, 「연맹국가의 수장에서 공공의 왕으로: 신라시대 공공성과 불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예비적 연구」, 『한일고대사 속의 공공성』(2012), 5쪽). 물론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즉, ‘화백제도, 남당, 정사암, 제가평의회 등의 합의체가 ‘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공성의 구현이라고 보는 결론을 납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남당, 정사암(백제), 제가평의회(고구려) 등의 사례는 민주적 전통이라기보다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치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며 민주주의 이념이 정착된 현대의 국회의원도 이념적으로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정치적 공공성과 관련하여 신라 중고기 이후 통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근간으로 삼은 율령을 검토의 대상으로 보았다. 신라에 있어서 율령의 성립과 제정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관습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부터 초월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일원적인 지배체제가 성립되고 사회운영의 기본틀이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신라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의 율령의 정치적 공공성 단서를 대략 두가지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II. 중고기 율령의 정치적 공공성

1. 나물왕대(356~402)의 정세와 대외교섭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나물왕(奈勿王) 26년(381) 무렵 처음으로 전진(前秦)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과 함께 전진왕 부견(苻堅)과 신라사신 위두(衛頭)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두를 부씨의 진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부견이 위두에게 묻기를, ‘경은 해동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라고 하니 (위두가) 대답하기를, ‘중국처럼 시대가 바뀌어 달라지고 이름이 고쳐져 새로워졌으니 지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¹⁵

는 국민의 대표지만, 현실적으로 민중의 대변자라는 인식이 희박하다는 것이고 하물며 그런 관념조차 없었던 고대 의사결정 기구에 구성원의 대변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다(이희진,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국가발전단계의 의미와 공공성」, 『한일고대사 속의 공공성』, 제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학술발표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2. 12, 7쪽).

¹⁵ 『三國史記』 新羅本紀 奈勿(那密)尼師今 37年(392)條.

위의 기사는 전진왕 부견이 위두에게 ‘해동(海東)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자 위두가 ‘역시 중국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명호(名號)가 바뀌니 지금이 그와 같다’고 답변한 대목이다. 당시 신라는 진한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라(斯羅) 혹은 사로(斯盧)·신로(新盧)·신라(新羅) 등 다양한 국호로 불렸다.¹⁶ ‘신라’라는 국명이 고구려 및 백제와 함께 별도의 전(傳)에 처음 등장한 역사서는 『양서(梁書)』며 『삼국사기』가 『양서(梁書)』의 기사를 전제하였다.

이 책에는 신라라는 국호가 송대(宋代)부터 ‘사라’와 함께 불린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¹⁷ 그런데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신라가 전진에 사신을 파견한 시점을 그보다 4년 전인 내물왕 22년(377) 무렵으로 적고 있다. 곧, 신라가 태원(太元) 2년에 고구려 및 서남夷(西南夷) 여러 나라와 함께 진(秦)에 사신을 보냈다는 것이다.¹⁸

따라서 사료상에서 부견이 언급한 ‘옛날의 일’이란 377년 이전 진한 소속의 일국이었던 신라가 점차 팽창하며 대외관계에서 사로 외에 신라라는 국호를 정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아울러 ‘시대변화’는

16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麻立干 4年條. “冬十月 群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

17 『梁書』列傳 新羅條.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

18 『資治通鑑』晉紀 烈宗上之中 太元 2年 春條.

19 『三國史記』新羅本紀 基臨(基立)尼師今 10年(307)條에 보이는 “復國號新羅”라는 기사에 대해 지증왕 4년에 신라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闢智의 탄생을 계기로 ‘계림’이라 했던 국호를 다시 ‘신라’ 혹은 ‘사로’로 환원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석하기도 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1997), 74쪽). 그러나 신라는 진한제국 시절부터 대외적으로 사로국·사라국이라는 국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계림 외에도 신라라는 국명을 함께 사용하기 했으나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가 307년에 와서 대외적으로 신라라는 국명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라는 국호가 지증왕 이전부터 사용했던 사실은 5세기대 신라의 사정을 전하는 『梁書』에 송나라 시절 ‘斯羅’ 외에 ‘新羅’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하는 기사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 내 지배세력의 구성과 권력구조, 거주지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실²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니사금이란 왕호를 마립간으로 고쳐 부르는 등의 국내 정치 및 주변 여러 나라 정세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듯하다.²¹

나물왕은 신라 역사상 김씨 성을 가진 최초의 왕으로서 제17대 왕에 등극하며 이후 김씨 혈족이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최고위 권력자를 뜻하는 왕호의 변경은 나물왕대의 정치적 상황에 부합한다. 이러한 신라와 전진간의 교섭에 대해 백제를 매개로 이루어졌을 것이란 견해가 있다.²²

그런데 377년경 고구려는 남쪽의 백제를 공벌한 뒤 전진에 사신을 파견한 바 있다.²³ 그러나 381년에 고구려와 백제가 전진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는

지증왕대에 신라는 국호를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해왔던 여러 국명 가운데 신라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한문해석을 붙여 국호로 확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20 이종우, 「영일냉수리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통치체제」,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일조각, 1994), 133~135쪽.

21 조범환, 「신라 奈勿王代 前秦과의 交涉과 그 정치적 배경」, 『신라사학보』 41(2017).

22 이는 1935년에 나진우(羅振玉)의 『정송당집고유문보유(貞松堂集古遺文補遺)』 45·46에서 소개한 「백제왕동호부(百濟王銅虎符)」라는 호부명문의 제작 주체를 전진으로 상정하여 백제와 전진의 교섭을 추정한 주장이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나오는 '신라국은 백제의 동쪽에 있다'고 한 기사 및 『통전(通典)』의 '신라왕은 본래 백제 사람인데 신라로 도망해 들어가 드디어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 신라는 작아서 스스로 사신을 보내 방문할 수 없었다'라고 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기사의 주체가 백제이며, 이들의 도움으로 신라가 전진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5호 16국 중에 하나인 전진의 부락이 379년 스스로 거병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전 어느 시점에 백제왕에게 동호부를 수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동호부를 받은 백제왕이 근초고왕이며 그가 372년경 동진에 사신을 보내 '진동장군령낙랑 태수'라는 작호를 받은 후 어느 시기에 고구려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바닷길로 전진에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방선주, 「예, 백제관계 호부에 대하여」, 『사총』 17·18(1973), 41~42쪽; 노중국,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 『신라사학보』 33(2015), 309~314쪽).

23 『資治通鑑』晉紀26, 恽宗孝武皇帝上之中 太元 2年條;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小獸林王 7年 11月條.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치통감』에도 ‘380년에 전진의 행당공(行唐公) 낙(洛)이 역모를 일으키고자 선비(鮮卑)·오휘(烏桓)을 비롯해 고구려·백제·신라·휴인제국(休忍諸國)에 사신을 파견하여 병사를 모집하고자 했으나 여러 나라가 거부한 바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²⁴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때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 등이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삼국사기』에도 나물마립간 22년(377년)에 신라 측에서 전진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없다. 그러나 『태평어람』에 382년경 신라국왕이 전진에 미녀를 바쳤다고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진에서 역모사건이 마무리된 뒤 381년경 신라에서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백제는 384년경 동진(東晉)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²⁵, 당시 백제의 대중국외교 비중은 전진보다 동진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고구려의 방해를 피해 바닷길로 전진에 사신을 파견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럼에도 전진이 백제와 공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 해동(海東)에서 강국으로 부상하던 백제의 위상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백제는 그에 앞선 시기인 372년경 동진에 사신을 파견한 바 있다.²⁶ 그리고 382년경에는 신라에서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미녀를 바치면서 신라국이 백제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진 역시 이미 백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신라의 전진으로의 사신파견은 국제정세상 고구려의 도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신라의 변혁은 나물왕의 칭호에서도 알 수 있다. 사료상에는 니사금과 마립간이란 두

24 『資治通鑑』 晉紀 烈宗上之中 太元 5年(380) 3月條.

25 『晉書』 帝紀 孝武帝紀 太元 9年 秋7月條.

26 『晉書』 帝紀 孝文帝紀 咸安 2年 春正月條.

개의 호칭이 전해진다. 곧, 『삼국사기』에는 나물왕의 칭호로 니사금이 쓰였다. 반면 『삼국유사』에는 마립간으로 기술되어 있다.²⁷ 학계에서는 마립간이 니사금에 비해 정치지배력이 강화된 통치자의 칭호로서 최고의 지배자인 우두머리 또는 제일의 간(干)이란 뜻을 가지며 이에 가장 부합되는 왕으로 실성왕보다는 부진(苻秦)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나물왕에서 찾고 있다.²⁸

나물왕은 392년경 고구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자 조카 실성을 인질로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런데 고구려와는 앞서 서기 245년(조분니사금 16)에 고구려가 신라 북변을 침략하자 신라조정에서 이찬 우노(于老)와 병사들을 출격시켜 대결한 바 있었다. 물론 신라는 그 이전부터 백제·왜 등과 우호적 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대결이 심했던 신라로서는 특히 광개토태왕 대 고구려의 강성함을 익히 알고 인질(人質)을 통해 고구려와 외교관계를 맺어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²⁹ 「광개토태왕릉비」의 명문 내용 속에는 신라를 침입한 왜인과 이들을 조정한 백제와 가야제국을 정벌하기 위해 고구려군이 출정하게 된 배경을 서술한 대목이 있다. 이에 의하면 태왕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잠시 평양에 머물고 있을 때 신라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 국경에 왜인들이 가득 쳐들어와서 성들을 격파하고 있으니

27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麻立干 卽位年條에는 論曰에서 居西干을 칭한 신라왕이 1인, 次次雄을 칭한 왕이 1인, 尼師今을 칭한 왕이 16인, 麻立干을 칭한 왕이 4인이라 하였는데 놀지왕과 자비왕, 소지왕, 지증왕 등을 가리킨다. 『삼국유사』왕역편에는 내물왕부터 지증왕까지 모두 6왕이 마립간을 칭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양 사서간에는 마립간을 칭한 왕의 수에 차이가 난다.

28 『한국사 6: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신라·가야』(국사편찬위원회, 1997), 61쪽.

29 『三國史記』新羅本紀 奈勿尼師今 37年條. “春正月 高句麗遣使 王以高句麗強盛 送伊浪大西知子實聖爲質”

노객(奴客)으로서 고구려왕에게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³⁰ 이는 앞서 나물왕이 고구려에 왕족을 인질로 보낸 배경과 맞닿아 있는데, 당시 군사강국 고구려에 대한 신라인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라는 고구려 및 전진과의 교섭을 통해 문화수입에도 적극적이었다. 370년 당시 고구려는 전진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전쟁에 패해 자국으로 도망쳐 온 연(燕)의 태부(太傅) 모용평을 전진에 압송하여 보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전진에서는 372년경 승려는 물론 불상과 경문 등을 고구려에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무렵 고구려에서는 태학을 설립하여 자제를 교육시키는가하면 그 다음해에 율령을 반포하였다.

2. 문자의 전래와 활용

『양서』 신라전에는 ‘신라에 문자가 없어 나무를 깎아 신효로 삼는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다.³¹ 그러나 이는 당대 신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의하면, 신라 건국 초기에 사로 6촌으로 대표되는 고조선계 유이민 세력들이 다수 거주하며 삼한시절 낙랑 등의 외부세력과 군사적 접촉이 빈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에서도 어느 정도 한자(漢字)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리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년이나 초기 기사에 대해서는 일제시대부터 일본인 중심으로 불신하는 학자가 있었으며 최근에 들어와 한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기사에서는 기년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으나 대체로

30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壤 而新羅遣使自王云 倭人滿其國境 潟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

31 『梁書』列傳 新羅條. “…… 無文字 刻木爲信 ……”

기년과 여러 초기 기사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 초기인 지마(紙摩)니사금 또는 지미(紙味)니사금 14년(125)에 밀갈(靺鞨)이 신라의 북쪽 국경을 침범하자 백제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글을 보낸 사실이 있다.³² 둘째, 아달라니사금 12년(165)에 아찬(阿漬) 길선(吉宣)이 모반을 일으키고 밭각되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백제로 망명한 사건이 일어나자 왕이 백제에 그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낸 사건이 있다.³³ 셋째, 흘해니사금(訖解尼師今) 36년(345)에 왜왕이 신라에 서찰을 보내 절교(絕交)를 선언한 일이 있다.³⁴ 넷째, 나물니사금 18년경(372)에 백제의 독산성주가 3백인의 무리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자 백제왕이 글을 보낸 사실이 있다.³⁵

물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신라와 백제 및 왜국 사이에 글자를 통한 외교관계가 가능했다는 것이며 신라에서 문자의 전래와 활용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³⁶ 그런데 345년경 신라에 서찰을 보낸 이 왜왕은 『일본서기』에 기록된 소위 인덕천황(仁德天皇)으로 볼 수 있다. 『일본서기』의 기년은 통상적으로 120년을 더해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조의 기사는 5세기대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또한 인덕천황에 대해서는 『고사기』·『일본서기』의 전승과 『송서』 왜국전에 전하는 소위 왜의 5왕 비정문제 등과 관련하여 허구라는

32 『三國史記』新羅本紀 紙摩(紙味)尼師今 14年 春正月 및 秋7月條; 同書 百濟本紀 己婁王 49年條.

33 『三國史記』新羅本紀 阿達羅尼師今 12年 冬10月條.

34 『三國史記』新羅本紀 訖解尼師今 36年 2月條.

35 『三國史記』新羅本紀 奈勿尼師今 18年條.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36 유창균·차주환·김택규, 「신라의 언어와 문자에 대하여」, 『신라와 주변제국의 문화교류: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9-1(1988), 경주 및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7~208쪽.

설이 있으며, 찬(讚)·진(珍) 등에 비정하는 설 및 응신(應神)과 인덕을 동일 인물로 보는 설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다.³⁷ 그리고 훌해니사금 36년은 서기 345년으로 『일본서기』 인덕천황 33년조에는 왜국에서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없다.

그러므로 4세기 중반에 신라와 교류한 왜왕을 인덕천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4세기대에 신라와 화친 및 군사충돌관계를 가진 왜의 실체가 동일하지 않다.³⁸ 『삼국지』 위서 왜인전과 『진서(晋書)』 왜인조에 의하면 왜국은 후한대에 그 수가 백여 국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그 중 30개의 나라가 통호했는데 남왕(男王)이 다스리는 구노국(狗奴國)으로부터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대국에 이르기까지 호구수 역시 1천여 호에서 7만여 호가 넘는 나라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오늘날의 일본 규슈 하카다[博多] 지역에 위치한 왜노국은 기원후 57년경 후한에 조공하면서 ‘한위노국왕인(漢委奴國王印)’이란 금인(金印)을 하사받았고³⁹, 여왕이 다스리던 야마대국은 238년경(景初 2) 위(魏)에 대부난승미등(大夫難升米等)을 대방군(帶方郡)에 파견하였는데 그 다음해인 239년에 명제(明帝)가 대방태수를 통해 왜의 여왕에게 조서를 내려 ‘친위왜왕비미호(親魏倭王卑彌呼)’라 하고 왜왕에게 친위왜왕(親魏倭王)의 금인자수(金印紫綬)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240년(正始 1)에는 위의 대방태수 궁준(弓遵)이 건중교위(建中校尉) 제준(梯僕) 등으로 하여금 조서와 인수를 갖고 왜국에 가서 왜왕을 만나 금백(金帛)·금계(錦罽)·도경(刀鏡)·미물(米物) 등과 조서를 내리도록 했는데 왜왕은 조은(詔恩)에 답사(答謝)의 상표(上表)를 올렸다고 한다.⁴⁰

37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일지사, 2002), 195쪽.

38 鈴木英夫, 「三國史記」の倭關係記事,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東京: 青木書店, 1996), 26쪽.

39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한마당, 1989); 阿部猛 編集, 『日本古代史事典』(東京: 朝倉書店, 2005), 61~67쪽.

40 『三國志』魏志東夷傳 倭人條.

이처럼 당시의 외교는 문서의 전달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문서외교에 대부난승미와 같은 도래계인들의 활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⁴¹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30년(375)조에 의하면, 백제 개국 이래 아직 문자기사가 없었는데 박사(博士) 고흥(高興)을 얻어 비로소 『서기(書記)』란 문자기사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⁴²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박사 고흥과 백제 『서기』의 편찬 사실을 근초고왕 말년에 삽입하여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삼국사기』 찬자가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왕의 말년에 그와 관련된 기사를 첨입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375년은 『서기』의 정확한 편찬 시기가 아닐 수 있다.

아무튼 『서기』는 백제 최초의 역사서로서 처음으로 공적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서기』를 편찬한 박사 고흥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낙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되는 와중에서 백제에 흡수된 중국계 이주민이거나 토착인으로서 성씨를 한자식으로 바꾼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백제보다 앞선 372년(소수림왕 2)에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태학이 설립되었고 국초에 문자로 기록한 『유기(留記)』라는 역사책이 존재하였다.⁴³ 그러다가 600년(영양왕 11)에 이르러 태학박사 이문진이 첨삭과 수정을 통해 다시 『신집(新集)』 5권으로 엮은 일이 있었다.⁴⁴ 물론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대체로 국초부터 전해진 각 부(部)의 시조설화 및 왕계가 반영된

41 上田正昭, 「漢字文化の受容と展開」, 『古代の日本と渡來の文化』(東京: 學生社, 1997), 14~17等.

42 “古記云 百濟開國以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43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2年條.

4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豐陽王 11年條.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詔太學博士李文眞 約古史 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고구려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초에 대해서는 국가형태를 갖춘 기원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지만⁴⁵ 소수림왕 전후로 추정하기도 한다.⁴⁶ 그런데 백제에서는 자국의 역사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이전에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시대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 유민의 이주와 더불어 마한의 백제국 때부터 이어진 중국 본토와 낙랑군과의 교류 및 한예(韓濱)가 강성해진 2세기 말 후한 군현민(郡縣民)들의 한국(韓國)으로의 유입⁴⁷ 등을 통해 백제에서도 한자의 유입 및 활용은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건너간 씨족들 가운데에서는 한자를 익히고 사용하던 부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씨족이 당시 왜국의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주도로 당시 갈등관계에 처해 있던 신라에 서찰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국에서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이르러 왕인(王仁)과 같은 백제의 학자를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유교경전을 비롯한 학문을 배우고 백제로부터 다종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다.⁴⁸ 그러다가 5세기 중후반 이후 고구려에 대항해 백제와 화친관계를 가진 신라가 6세기 초반 백제를 통해 처음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의사를 전달한다.⁴⁹ 이때 신라는 백제를 통해 글이

45 황위주, 「한문자의 수용시기와 초기정착과정(3)」, 『동방한문학』 24(2003), 31쪽.

46 김현숙, 『한국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 I-고구려』(국사편찬위원회, 1996), 59~60쪽.

47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48 『日本書紀』 應神天皇 16年 春2月條에는 왕인이 왜국으로 건너가 태자 菲道稚郎子의 스승이 되어 천자문과 논어 등 여러 경전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런데 응신대는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24초반의 시기로 보고 있으며 왕인에 대해서는 그의 출신과 실존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왕인의 출신과 실존여부가 무엇이든 당시 왜국에는 소위 韩人們의 집단이주와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49 『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 8年條; 『梁書』 列傳 新羅條. “普通二年 王姓募名秦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아닌 말로 의사소통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에 문자가 없다고 기록한 『양서』의 기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정보와 이해⁵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⁵¹

기록에 따르면 일부 중국인들은 전란을 피해 진한지역으로 망명하거나⁵², 고조선유민들이 남하하여 경주지역에 사로 6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⁵³ 창원 다호리유적에서는 오수전(五銖錢)을 비롯한 동전과 칠기 및 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제1호묘의 죽협(竹篋)에서는 철부와 함께 필기도구인 붓과 칼이 발견된 바 있다. 특히 붓과 칼은 경제활동 내지 주변지역과의 교역을 위한 문서작성용 도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유물은 창원 다호리지역 전체 민이 아니더라도 경제활동 내지 교역을 담당하던 일부 계층이 문자를 사용하던 흔적으로 보인다.⁵⁴ 그런데 최근 경주평야내 탑동부근에서는 신라 초기 건국세력의 수장급 무덤으로 추정되는 목관묘가 발굴된 바 있다. 발굴 결과 이 무덤 안에서는 비록 붓과 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외교역의 가능성성이 짙은 다호리유적과 유사한 형태의 유물들이 다양 발견되었다.⁵⁵

50 주보돈, 「신라의 한문자 정착과정과 불교수용」, 『금석문과 신라사』(지식산업사, 2002), 397~398쪽.

51 김창석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521년 당시 신라사가 백제사를 따라 사신을 보냈고 백제사신의 통역을 통해서만 양나라 조정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제 사의 왜곡된 의사전달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新羅 法制의 형성 과정과 율령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8(2010), 176~177쪽).

52 『後漢書』 東夷列傳 韓條;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53 『三國史記』 新羅本紀 始祖 赫居世居西干條. 학계에서는 신라본기의 기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으로 신라 초기 기사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54 국립중앙박물관, 『창원 다호리 유적 1-7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2012), 430쪽.

55 한국문화재재단,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V: 경북 2」(2011), 148~175쪽, 219쪽.

따라서 신라에서도 건국 초기부터 유입된 이민자들 가운데 일부 주도 세력이 중국왕조 또는 군현과의 교류나 귀복(歸服)⁵⁶ 등을 통해 한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흥왕대 이전부터 한자가 널리 활용된 사실은 과거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로 널리 알려진 5세기대 조성(造成)의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⁵⁷나 6세기대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천마총(天馬冢) 출토 칠기(漆器)⁵⁸ 등의 명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처럼 신라에서는 그 이전부터 외부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신라 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문자의 성립과 의사전달이 가능하였고 이를 반영한 각종 비문이 5·6세기를 중심으로 지방에까지 광범위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521년 신라와 양나라의 첫 교류 이후 549년(진흥왕 10)에도 양나라의 사신과 입학승(入學僧) 각덕(覺德)이 신라에 오는데⁵⁹, 양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 사이의 긴밀해진 관계는 양나라로부터 백제에 전해진 경전을 비롯해 불교 및 유교문화⁶⁰와 법제 등이 신라에도 들어왔을 것이라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는 신라 하대인 924년(경명왕 8)에 제작된 「봉암사지 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서 불교의 동아시아 전래과정을 서술하고 양보살제(梁菩薩帝; 梁武帝)가 동태(사)에서 (궁궐로) 돌아온 지 한 해만이요 법흥왕의 율조(율령)를 마련한 지 8년째라고 기술⁶¹한 사실에

56 『三國史記』新羅本紀 基臨(一云基立)尼師今 3年(300)條. “三月 至牛頭州 望祭太白山 樂浪
帶方兩國歸服”

57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449년설과 481년설 등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449년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강종훈, 「5~6세기 삼국간 국경의 변동에 관한
제설의 검토」, 『대구사학』 116집(2014), 20~21쪽).

5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고대금석문자료 Ⅱ』(1995), 271~275쪽.

59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 10年條.

60 노용필, 「新羅時代『孝經』의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
학논총』(일조각, 1994), 179~188쪽.

61 “…… 時迺梁菩薩帝 反同泰一春 我法興王 剌律條八載也 ……”

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신라에는 나물왕대 이전부터 낙랑과 대방 또는 고구려 및 백제 등을 통해 점차 전래되었을 것이며 지증왕대·법흥왕대·진흥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⁶² 비록 신라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차돈의 순교처럼 정치세력 내부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에도 진흥왕순수비의 각종 문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에서는 중국의 여러 경전을 받아들일 만큼 한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본 여건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⁶³

III. 율령 반포와 교(教) · 법(法) · 영(令)의 제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물왕대 이전부터 낙랑과 대방 등의 중국 군현 및 고구려·백제 등과의 교류는 물론 사로국 시절부터 문자의 소통이 가능했던 신라에서 6세기대인 법흥왕 7년(5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율령이 반포되었다. 이 시기의 율령 제정은 신라가 초기부터 진행한 진한 및 변한 등 주변 소국에 대한 복속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난 뒤 이전과 다른 정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정한 법제도의 제정과 개혁의 요구가 대두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고구려 및 중국왕조와의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통해 율령이란 새롭고 체계적인 법률제도를 인지하며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국내 통치의 기반을 확충하고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을 것이다.

62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1976), 689~690쪽.

63 노용필, 『신라진흥왕순수비연구』(일조각, 1996), 130~163쪽.

그런데 율령 반포 이전부터 신라의 왕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와 법, 영 등을 통해 통치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혹은 ‘교령법(敎令法)’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 법의 시행 시점을 늦어도 5세기 실성왕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본다.⁶⁴ 아울러 법흥왕대(514~539) 율령 반포 이후에도 교·법·영이 등장하는 것은 율령이 반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그 조항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고 제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⁶⁵

아무튼 신라에서 교·법·영과 율령 등을 시행하였던 것은 그만큼 사회질서가 변화하고 이를 각종 법체계에 반영하여 수립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율령은 각 집단간 또는 지역간 분산되어 있던 관습법을 포괄하면서 그 위에 그것을 초월하는 또는 국가 전체에 작용하는 일원적인 공법체계(公法體系)를 수립한 것인데 그러한 법체계가 성립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점차 확립되어 갈 때 제정되는 것이다.⁶⁶ 이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정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율령의 제정은 일차적으로 왕권의 강화와 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생(民生)의 안정과 사회혼란의 방지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관복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신라에서는 520년 무렵 백관의 공복제(公服制)를 시행하였다. 여기에서 공복제란 일종의 의관제(衣冠制)다. 곧, 조정의 공식석상에 설 때 관리들이 착용하는 복장(服裝)과 관(冠)을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한 제도다.⁶⁷

64 김창석, 앞의 논문, 206~211쪽.

65 김창석, 위의 논문, 210쪽.

66 노중국,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동방학지』 21(1979), 93쪽.

67 신라 중고기 공복제와 존비에 따른 복색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다음의 논고가 있다. 정덕기, 「신라 중고기 公服制와 服色尊卑」, 『신라사학보』 39(2017). 한편 법흥 왕대 율령반포를 통한 의관제 내용은 당시 왕권의 강화와 중국과의 통교 등에 의해 관동제와 관직제의 운영을 볼 수 있는 의제와 관제를 마련했던 것으로 볼

가. “율령을 반포하고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지위나 계급에 따른 질서를 정하다.”⁶⁸

위 기사를 통해 유추해 보면, 신라에서는 공복제가 시행되기 이전 일정한 규정에 맞춘 관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하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복을 착용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신라에서 옛 방식의 의복이 어떤 빛깔과 모양이었는지 살펴볼 수 없으나 법흥왕대에 이르러 처음 6부인(部人)에 대해 존비(尊卑)에 따라 복색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⁶⁹ 그러나 사료상에는 율령이 반포되었다는 기사만 전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과거 일부 일본인 학자들은 신라의 율령반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⁷⁰ 그 가운데에는 신라 중고기의 정치 사회제도 상황으로 보아 태종무열왕대 이후에 가서야 당나라식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율령제가 성립되었다거나, 신라의 지배체제나 국제관계로 보아 중국적인 율령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시각까지 존재하였다.⁷¹ 최근에는 6세기 전반 신라에 처음 수용된 율령이 관제(官制)와 관련된 내용임을 들어 수당시대(隋唐時代) 이전부터 율령의 중심이념은 관제였을 것이란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⁷²

그러나 신라에서는 공식 율령반포에 앞서 지증왕 5년(504)과 15년(514)에 이미 상복법(504)과 시호법(514) 등이 제정되어 있었다. 또한 지증왕 3년(502)에는 ‘하령(下令)’이란 왕의 명령으로 순장의 금지를 전달되고 있었다.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희만, 「신라의 의관제와 골품제」, 『경주사학』 27(2008), 7쪽).

68 『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 7年 春正月條.

69 『三國史記』 雜志 色服條.

70 武田幸男,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東京: 龍溪書舎, 1974); 김용선, 「신라 법흥왕대의 율령반포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가라문화』 1(1982).

71 강봉룡, 앞의 논문, 1~2쪽.

72 山本孝文, 앞의 책, 31쪽.

율령이 반포된 이후인 529년(법홍왕 16)에는 여전히 ‘하령’이란 이름으로 살생을 금하기도 하였다. 특히 상복법은 공복제와도 연결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기존 신라 전통의 상복을 국가 기준으로 통일하고 1년동안 상복을 입으면 왕을 중심으로 그 친족집단과 신라사회 구성원의 서열을 부여하는 사회편제방법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⁷³

나. ㄱ-“상복(법)을 마련하여 반포하다.”⁷⁴

ㄴ-“시호를 지증이라 하며 신라의 시호법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⁷⁵

ㄷ-“순장을 금하도록 영을 내리다.”⁷⁶

ㄹ-“살생을 금하도록 영을 내리다.”⁷⁷

이처럼 6세기대에 시행된 잇따른 의복의 제정은 예(禮)에 따른 관인분별이 국가적으로 요구되었음을 드러내며 분별의 가시성을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⁸ 그런데 신라에서는 율령이 공식적으로 반포되기 전 법령을 공포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일정한 서식을 갖추고 있었다. 441년 또는

73 서영교, 「신라 지증왕대 衣服法과 一夫一妻制」, 『역사와 세계』 53(2018), 95~97쪽.

74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麻立干 5年 夏4月條.

75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麻立干 15年條. 그런데 『三國遺事』王曆에는 법홍왕의 법홍이 시호라고 하며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두 사서에서 전하는 신라 시법의 시작이 각각 지증왕대와 법홍왕대로 약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아울러 법홍왕 22년(535)에 작성된 일명 「蔚州川前里刻石乙卯銘」에는 ‘聖法興大王’이란 표현이 보이므로 법홍은 시호가 아니라 생존시에 사용하던 왕호였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사서와 「진홍왕순수비」 등에서 진홍왕과 진평왕,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생존 당시의 왕명이란 점에서 시호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신라에서 시호가 시작된 시기를 태종무열왕 이후로 보기도 한다.

76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麻立干 3年 春2月條.

77 『三國史記』新羅本紀 法興王 16年條.

78 정덕기, 앞의 논문, 37~38쪽.

501년 제작의 「포항중성리신라비」(이하 「중성리비」)에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 및 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교가 내려진 상황이 담겨져 있다.⁷⁹

「중성리비」에는 교를 내린 주체, 쟁인(爭人)의 구성과 영(令), 법령의 준수, 전서(典書)의 직임자 임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영일)냉수리신라비」(이하 「냉수리비」)에도 ‘왕교(王教)’·‘전세이왕교(前世二王教)’·‘교(教)’·‘별교(別教)’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거나 갈문왕(葛文王) 이하 여러 간지(干支)들이 교를 공론(公論)한 대목이 있다.⁸⁰ 물론 이들 비문은 지배층의 법 독점이 이행되던 시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⁸¹

「중성리비」에 이은 「냉수리비」의 서식은 율령에도 반영되어 「울진봉평리신라비」(이하 「봉평리비」)의 서식으로 정형화된 것이다.⁸² 아울러 「중성리비」나 「냉수리비」와 달리 524년(법흥왕 11)에 제작된 「봉평리비」에는 지방민을 통제와 처벌대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화와 목민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사실을 보여준다.⁸³ 550년대 초에 제작된 「단양적성리신라비」의

79 2009년 경북 포항 흥해읍 도로공사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신라비는 가칭 ‘포항 학성리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신라 왕경 경주를 장악했던 6개 핵심세력인 6부와 지방세력 사이에 재산 등을 둘러싼 다툼이 일자 왕과 주요 세력 가들이 회의를 통해 중재한 뒤 이를 지킬 것을 포고한 내용으로 추정된다(“辛巳 …… 噉部習智阿干支沙喙斯德智阿干支 教沙喙専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 本牟子喙沙利夷斯 利白 爭人 噉評伐斯弥 沙喙夷須 牟旦伐 [...] 昔云 豆智沙干支宮 日夫智宮 奪専 今更還牟旦 伐 [...] 若後世更善人者 与重罪 ……”).

80 신라 「냉수리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이종우, 「영 일냉수리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통치체제」,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일조각, 1994).

81 윤진석, 「금석문을 통해 본 6세기 신라 법제와 지방민 인식변화」, 『한국고대사연구』 93(2019), 150~158쪽, 170쪽.

82 박남수,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新釋과 지증왕대 정치개혁」, 『한국고대사연구』 60(2010), 146~148쪽.

83 윤진석, 앞의 논문, 170~172쪽.

비문 속에도 각각 ‘전시왕대교법(前時王大教法)’·‘노인법(奴人法)’과 ‘전사법(佃舍法)’·‘국법(國法)’·‘사법(使法)’ 등이 보인다. 그리고 「남산신성비(南山新
城碑)」에는 성을 완공한 후 3년 이내에 봉과될 경우 처벌받겠다는 서약이
존재하며 893년(진성왕 7)에 최치원이 짓고 924년(경명왕 8)에 세워진 「봉암
사지증대사적조탑비」의 작문 속에서 법흥왕대 율령반포 사실이 언급된
점⁸⁴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율령의 반포시기만을 전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⁸⁵ 신라보다 좀 더 일찍 율령의 반포와 시행이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율령이 반포되기 전의 건국 초기에 태후의 장례나 형제간 왕위계승, 취수혼
(娶嫂婚) 등⁸⁶의 사례처럼 부여의 관습법을 답습하였다.⁸⁷ 그러다가 4세기에
접어들어 고구려에서는 중국왕조와의 관계 및 넓어진 영토와 증가된 인구,
통치기반의 확대와 수취체제의 정비, 고국원왕의 전사에 따른 국내적 혼란
의 극복과 지배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율령이 처음 반포되
었다.⁸⁸ 학계에서는 중고기 신라율의 모법(母法)을 고구려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⁸⁹

그런데 고구려에서 율령이 반포되기 전 372년에 진왕(秦王) 부견(符堅)이
사신 및 승려를 고구려에 보내 불상(佛像)과 경문(經文) 등을 전하게 했고

84 「영일냉수리비」·「남산신성비」·「울진봉평비」·「단양신라적성비」·「봉암사지증대
사적조탑비」, 『韓國金石文資料集(II): 신라·가야편』, 국사편찬위원회(1995).

85 고구려 율령의 형식은 진(晉)의 태시율령(泰始律令)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동준, 「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 『한국사연구』
178(한국사연구회, 2017), 68~69쪽).

8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始祖東明聖王 14年 秋8月條.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
后禮葬之 遂立神廟”; 同書 山上王 卽位年條. “…… 兄死弟及禮也 …… 王本因于氏得位 不復
更娶 立于氏爲后”

87 연정열, 『한국법제사상사』, 한성대출판부(2007), 15~23쪽.

88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3年(373)條.

89 홍승우, 앞의 논문(2004), 29쪽.

그 해에 소수림왕은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태(태)학을 세우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다.⁹⁰ 따라서 고구려의 불교가 당시 부견의 진나라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들어 진율(秦律)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의 율령이 제정되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 신라율(新羅律)이라는 주장도 있다.⁹¹ 그러나 1988년에 발견된 「봉평리비」의 ‘장육십(杖六十)’·‘장백(杖百)’ 등의 기사를 근거로 북위(北魏)의 태화율령(太和律令)⁹²이나 양(梁)의 천감율령(天監律令)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의 제시와 함께 영이 신라적 색채가 강한 반면 율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⁹³

그리고 신라 율령의 모범을 가늠하는 데 중국의 위진남북조시대와 고구려의 사형기사를 살펴보고 북위와 양, 고구려율과의 유사성은 보이지만 형벌체계가 다르며 법흥왕대 고구려와의 관계악화라든가 ‘-법’을 사용한 신라 율령의 명칭 및 교류가 없던 북위와의 관계, 율령반포 후 양나라에의 사신파견 등에서 새로운 신라의 법제를 구축한 것이라기보다 전통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견해도 있다.⁹⁴ 그런데 법흥왕대 신라의 율령이 기존 정치·경제·문화수준에 따라 운영되었을 것이란 예상은 가능하다. 아울러 법흥왕대 신라와 고구려의 외교관계가 순탄치 못했다고해도 고구려의 정치·제도·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영향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신라의 율령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진덕왕대 이후 당식 율령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복사』 등 중국사서에서 신라의 풍속·의복뿐 아니라 형정(刑政)이 대략 고구려 및 백제와 같다고 한 기술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백제의

9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2年(372)條.

91 연정열, 앞의 책, 23~25쪽.

92 이인철, 앞의 논문, 136쪽.

93 주보돈, 「율진봉평신라비와 법흥왕대 율령」, 앞의 책(2002).

94 홍승우, 앞의 논문(2004), 29~40쪽.

경우 고구려나 신라와 다르게 율령을 반포했다는 짧막한 기사 한줄없다. 그런데 백제에서도 각종 법령이 존재했던 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확인된다.

즉, 백제 건국 초기 처음 논(稻田)을 만드는 단계에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⁹⁵ 그리고 백성에게 사사로운 양주(釀酒)를 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관리에게 명하여 제방을 쌓아 농사를 권장하는 기록이 있다.⁹⁶ 그런데 백제에서는 근초고왕대에 ‘박사(博士)’라는 전문적인 관직을 소유한 고흥(高興)에 의해 국사(國史)가 편찬된 사실이 있다.

또한 백제에서는 진(晉)을 통해 불교의 도입과 같은 외래문화의 전래⁹⁷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비슷한 시기에 정비된 법령의 제정을 통해 형법률의 체계화를 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도 정비된 율령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⁹⁸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된 것이 6세기대에 조영된 무령왕릉 출토 매지권(買地券)의 내용이다. 이 유물에는 백제의 법률이나 형률체계에 당시 교류하던 중국왕조의 율령조항들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무령왕릉의 매지권에는 ‘부종율령(不從律令)’이란 문구가 있는데 이는 천제(天帝)의 율령이나 속세의 율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중국에서 사용된 형식을 받아들여 백제에도 적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95 『三國史記』百濟本紀 多婁王 6年(33) 2月條, “下令國南州郡 始作稻田”

96 『三國史記』百濟本紀 多婁王 11年(38) 秋 및 同書 百濟本紀 仇首王 9年(222) 春2月·3月條.

97 『三國史記』百濟本紀 近肖古王 30年 및 枕流王 卽位年條.

98 노중국, 「백제율령에 대하여」, 『백제연구』 17(1986); 정병준, 「중국율령의 백제전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9); 전덕재, 「백제의 율령반포 시기와 그 변천」, 『백제문화』 47(2012).

또한 사료상에서는 백제가 고이왕 29년(262)에 재물을 받은 관인이나 훔친 자에게 금고종신법(禁錮終身法)을 적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⁹⁹ 이를 근거로 백제에서는 3세기 중엽 고이왕대에 중국의 율령이 처음 수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구당서』 백제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비시대의 일이 소급부회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중국측 사서와 비교검토해 볼 때 고이왕대는 여전히 마한의 연맹체적 국가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근초고왕대는 영토의 확장이 가장 활발하였고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유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사편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백제에서의 율령의 수용을 근초고왕대로부터 근구수왕대로 보면서 진의 태시율(泰始律)이 백제율령의 모범이 된다는 주장이다.¹⁰⁰ 한편 16관등을 완비하고 의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법규를 성문화하여 정비한 개로왕대에 율령이 반포된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다.¹⁰¹

이상과 같이 백제에서는 율령의 내용은 물론이고 고구려나 신라와 다르게 공식적 율령반포 시기조차 사료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백제에서 각종 법령이 시행된 점은 확실하다. 이는 형옥(刑獄)의 일을 관장한 조정좌병(朝廷佐平)이라는 내관(內官)이 존재한 것에서 알 수 있으며¹⁰²,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북사』에는 백제의 형벌 가운데 반반(反叛)과 퇴군(退軍) 및 살인자에 대해 목을 베고 도둑질한 자는 유배를 보내며 놀물을 받은 자는 두 배를 거둬들인다고 한 내용이 실려 있다.¹⁰³ 『구당서』에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99 『三國史記』 百濟本紀 古爾王 29年 春正月條.

100 노중국, 앞의 논문(1986), 58~59쪽.

101 전덕재, 앞의 논문, 107~115쪽.

102 『三國史記』雜志 職官(下) 高句麗·百濟職官條.

103 『北史』 列傳 百濟條.

반역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은 적몰하며, 살인자는 노비 세 명으로 속죄케 하고, 관인으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세 배를 추징하며 종신토록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⁰⁴ 그런데 『북사』와 『구당서』에는 법 적용에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두 사서 모두 반역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형을 구형하는 데 반해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아닌 속죄로 단죄하고 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자의 추징금이 2배에서 3배로 늘어나고 종신금고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삼국사기』 고구려 및 백제의 직관지 편찬 당시 연대가 아득히 멀고 오래되어 사료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¹⁰⁵으로 인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족 더 복잡하고 엄중한 형벌내용 및 형벌체계와 함께 백제의 역대 왕들이 내린 각종 법령이나 시행령 등을 모아놓은 일종의 법률집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신라에서는 율령을 제정하고 반포할 때 양나라와의 사신파견을 통해 직접 중국 왕조의 형법내용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라가 비록 6세기 전후로 백제와는 화친관계에 놓여 있었으나 고구려와는 악화된 관계에 처해 있었다고해도 고구려의 율령이나 백제의 법령을 바탕으로 신라의 현실에 맞춰 반영해 나갔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동시대 중국과 신라 율령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신라의 사형제나 장형제의 내용과 중국의 형벌체계를 비교하여 신라 율령의 모법을 염밀히 가려내기도 한계가 있다.¹⁰⁶

104 『舊唐書』列傳149上 東夷 百濟條.

105 “年代久遠 文墨晦昧 是故不得詳悉 今但以其著於古記及中國史書者 為之志”

106 신라 율령의母法을 고구려율령으로 보기도 한다(전봉덕, 「新羅律令考」, 『한국법제사연구』(1968); 노진곤, 앞의 논문).

IV. 맷음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신라 율령이 갖는 정치적 공공성의 단서를 간략히 서술해보기로 하겠다.

고대사회에 있어서 율령은 왕권의 강화와 함께 백성들의 일상에 사적으로 운영되는 상위지배층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신 국가권력을 이들에 직접 침투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신라에서 일어난 율령의 성립과 제정은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 정치적 공공성의 구현주체가 국가와 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혜자 역시 국가와 왕인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일반민(백성)이 포함될 수 있다.

『양서』 신라전에 의하면, 신라인의 절하는 방식과 걷는 모습은 고구려와 비슷하고 언어는 백제에 기대어 소통했다고 한다.¹⁰⁷ 『북사』에는 신라의 풍속·의복뿐 아니라 형정(刑政)이 대략 고구려 및 백제와 같다고 하였다.¹⁰⁸ 『양서』의 경우는 6세기대 사실을, 『북사』의 경우는 4세기대부터 7세기대 초반까지의 사실을 각각 기록한 역사서들이다.

그런 점에서 신라사회내에는 4세기대 이후부터 강한 존재감을 발휘했던 고구려의 정치·제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신라의 율령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라의 형벌 법규가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와도 같다고 한 점에서 일찍부터 활발히 추진해 온 백제의 대중관계와 이를 통해 얻은 수준 높은 학문지식이 반영된

¹⁰⁷ 『梁書』列傳 東夷 新羅條. “…… 其拜及行與高驪相類 無文字 刻木爲信 語言待百濟而後通焉 ……”

¹⁰⁸ 『北史』列傳 新羅條.

법률체계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율령은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의 구현으로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다. 즉, 신라에서는 율령이란 법체계를 통해 일방적인 소수의 독점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신라는 권력이 일부 왕을 비롯한 소수의 지배층에게 집중된 정치체제를 가진 고대사회로서 율령의 성립과 제정이 절대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사회질서를 공공히 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으며 근·현대의 서양에서 성립된 공공성의 이상에는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욕구는 각각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사회인식이라든가 정치 체제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국가를 형성하는 구성원내에서는 소수의 권리독점에 대한 끊임없는 반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수의 권력자는 이러한 반발을 억압하고 무마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의 한 형태가 제한적인 정치적 공공성이다. 즉, 정치적 공공성은 사적 권리의거나 이해관계들과 대립하는 가운데 도모되는데 소수의 권력자는 이를 확대해 나가는 사회체제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율령은 바로 권리의 정당성과 함께 공공성을 보장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흥왕대 신라 율령의 반포는 이전시대보다 좀 더 공공성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고대의 정치적 공공성과 중세, 근세의 시대적 공공성에 대한 차이, 예를 들면 중세 봉건제의 소위 과시적 공공성과의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진 못했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中原高句麗碑」,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宋書』, 『梁書』, 『北史』, 『舊唐書』, 『唐六典』, 『資治通鑑』, 『太平御覽』, 『古事記』, 『日本書紀』.

2. 단행본

『韓國金石文資料集(II): 신라·가야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사 6: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신라·가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국립중앙박물관, 『창원 다호리 유적 1-7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1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고대금석문자료 II』. 1995.

권오영, 『한국사 6: 한국의 정치와 사회 II 백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 서울: 한마당, 1989.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 서울: 일지사, 2002.

김현숙, 『한국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 I -고구려』.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노용필, 『신라진홍왕순수비연구』. 서울: 일조각, 1996.

야마다 히데오(저), 이근우(역), 『日本書紀入門』. 서울: 민족문화사, 1988.

山本孝文, 『삼국시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서울: 서경문화사, 2006.

李丙燾, 『한국고대사연구』. 서울: 박영사, 1976.

연정열, 『한국법제사상사』.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7.

유원재, 『한국사 6: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백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주보돈, 『금석문과 신라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2.

한국문화재재단,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V: 경북 2』. 2011.

上田正昭·森浩一·山田宗睦, 『日本古代史』. 東京: 筑摩書店, 1980.

阿部猛 編集, 『日本古代史事典』. 東京: 朝倉書店, 2005.

3. 논문

강봉룡, 「삼국시기의 율령과 ‘민’의 존재 형태」. 『한국사연구』 78, 1992, 1~33쪽.

- 강종훈, 「5~6세기 삼국간 국경의 변동에 관한 제설의 검토」. 『대구사학』 116, 2014, 1~42쪽.
- 권인한, 「6세기 신라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대동문화연구』 113집, 2021, 349~398쪽.
- 김석근, 「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공성: 고대 한국에서의 민주적 전통과 그 정치적 합의」. 『양명학』 36, 2013, 371~398쪽.
- 김용선, 「신라 법흥왕대의 율령반포를 둘러싼 몇가지 문제」. 『가라문화』 1, 1982, 113~134쪽.
- 김창석, 「新羅 法制의 형성 과정과 율령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171~215쪽.
- 김희만, 「신라의 의관제와 골품제」. 『경주사학』 27, 2008, 1~25쪽.
- 노용필, 「新羅時代『孝經』의 受容과 그 社會의 意義」.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 학논총』, 서울: 일조각, 1994, 178~205쪽.
- 노중국,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동방학지』 21, 1979, 91~186쪽.
_____, 「백제율령에 대하여」. 『백제연구』 17, 1986, 55~66쪽.
_____,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 『신라사학보』 33, 2015, 305~336쪽.
- 노진곤, 「신라 율령체계의 발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집, 1998, 11~31쪽.
- 박남수,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新釋과 지증왕대 정치개혁」. 『한국고대사연구』 60, 2010, 117~158쪽.
- 방선주, 「예, 백제관계 호부에 대하여」. 『사총』 17·18, 1973, 35~54쪽.
- 배재훈, 「백제의 태학」. 『한국고대사탐구』 19, 2015, 157~207쪽.
- 서영교, 「신라 지증왕대 裹服法과 一夫一妻制」. 『역사와 세계』 53, 2018, 91~116쪽.
- 연민수,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대외관계」·「5세기 이전 신라의 대외관계」. 『고 대한일관계사』, 서울: 혜안, 1998, 343~396쪽.
- 유창균·차주환·김택규, 「신라의 언어와 문자에 대하여」. 『신라와 주변제국의 문화교류: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9-1, 1988, 185~210쪽.
- 윤진석, 「금석문을 통해 본 6세기 신라 법제와 지방민 인식변화」. 『한국고대사연구』 93, 2019, 147~180쪽.
- 이인철, 「新羅律令의 篇目과 그 內容」. 『정신문화연구』 17-1(통권 5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 129~159쪽.
- 이종욱, 「영일냉수리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통치체제」.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서울: 일조각, 1994, 110~150쪽.

- 이창수, 「상대 일본 문헌신화의 성립과 한국계이주민 연구」. 『일본연구』 제53호, 2012, 177~195쪽.
- 이희진,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국가발전단계의 의미와 공공성」, 『한일고대사 속의 공공성』, 제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학술발표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2. 12, 1~11쪽.
- 전덕재, 「백제의 율령반포 시기와 그 변천」. 『백제문화』 47, 2012, 107~115쪽.
- 전봉덕, 「新羅律令考」. 『한국법제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8, 257~316쪽.
- 정덕기, 「신라 중고기 公服制와 服色尊卑」. 『신라사학보』 39, 2017, 51~93쪽.
- 정동준, 「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 『한국사연구』 178, 2017, 67~100쪽.
- 정병준, 「중국율령의 백제 전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정영훈, 「고대 한국의 정치와 문화 속에서의 공공성」. 『한일 고대사 속의 공공성』, 제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학술발표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2. 12, 2~14쪽.
- _____, 「비교공공성 연구의 관점과 제언」. 제2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 연구소 학술발표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2. 6, 1~18쪽.
- 조범환, 「중국인 유이민의 백제 귀화와 정착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9, 2015, 7~36쪽.
- _____, 「신라 奈勿王代 前秦과의 交涉과 그 정치적 배경」. 『신라사학보』 41, 2017, 1~29쪽.
- 韓鈴和, 「한국 고대의 형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홍승우, 「신라율의 기본성격」. 『한국사론』 5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4, 1~63쪽.
- _____,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 217~260쪽.
- 황위주, 「한문자의 수용시기와 초기정착과정(3)」. 『동방한문학』 24, 2003, 5~42쪽.
- 武田幸男,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舎, 1974, 85~113쪽.
- 三品彰英, 「仁德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卷, 東京: 天山舎, 2002, 1~42쪽.
- 上田正昭, 「漢字文化の受容と展開」. 『古代の日本と渡來の文化』, 東京: 學生社, 1997, 11~26쪽.
- 鈴木英夫, 「“三國史記”の倭關係記事」.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東京: 青木書店, 1996, 1~342쪽.

국문초록

율령은 왕권의 강화와 함께 백성들의 일상에 사적으로 운영되는 상위지배층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신 국가권력을 이들에 직접 침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에 있어서 율령의 성립과 제정은 결과적으로 신라사회 의 공동체로서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라 공공성의 구현주체가 국가와 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혜자 역시 국가와 왕인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일반민(백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같이 신라의 율령은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의 구현으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신라는 권력이 일부 왕을 비롯한 소수의 지배층에게 집중된 정치체제를 가진 봉건적 시대의 사회로서 율령의 성립과 제정이 절대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사회질서를 공공히 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고대의 율령은 공공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으며 근·현대의 서양에서 성립된 공공성의 이상에는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구는 각각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사회인식이라든가 정치체제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국가를 형성하는 구성원 내에서는 소수의 권리독점에 대한 끊임없는 반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수의 권력자는 이러한 반발을 억압하고 무마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정치적 공공성은 사적 권리의지나 이해관계들과 대립하는 가운데 도모되는 데 소수의 권력자는 이를 확대해 나가는 사회체제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율령은 각 집단간 또는 지역간 분산되어 있던 관습법을 포괄하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국가 전체에 작용하는 일원적인 공법체계(公法體系)의 수립과 그러한 법체계가 성립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점차 확립되어가고

있었을 때 제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흥왕대 신라 율령의 반포는 이전 시대보다 좀 더 공공성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발판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이전과 다른 사회질서가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고일 2021. 9. 23.

심사일 2022. 1. 5.

제재 확정일 2022. 2. 10.

주제어(keyword) 신라(Silla), 법흥왕(King Beopheung), 율령(The Rule), 법체계(Legal System), 공공성(Publicness)

Abstract

A Theory about the Political Publicness of the Rule in the Middle Age of Silla

Kim, Sun-sook

The rule of Silla is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and reducing the influence of the upper ruling class, which is operated privately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infiltrating the national power instea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and enactment of the ordinance in Silla can be a phenomenon to create some public interest as a community of Silla society. This can be seen as the embodiment of Silla political publicity as the state and the king, and the beneficiary is also the state and the king, which can include the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As such, the rule of Silla has some meaning as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policies to promote publicness. On the other hand, however, Silla society was a feudal era in which power was concentrated on a few ruling classes including some kings, and the establishment and enactment of the rule of the law contributed to justifying the rule of the absolute and publicizing the social order. In this respect, there is a distance from modern people's perception of publicness and there is a side that does not meet the ideal of publicness established in the modern western world.

The desire for human power is fundamentally unchanged even if the social awareness or political system are different due to the background of each era. Therefore, in the members who form the state, there is a constant opposition to a small number of monopoly powers. Then a few powers will suppress and move to suppress this rebellion.

Political publicity is promoted in the face of confrontation with private power will and interests. A small number of powers are making a social system that expands it and moving toward justifying their own rule. The rule of law is enacted when the establishment of one way public law system that works on the whole country that transcends it and the centralized power that can establish and function such a legal system are gradually established, encompassing the common law that was dispersed between each group or region.

Therefore, the Banpo of Silla rule the reign of King Beopheung means that it became a kind of foothold to move toward publicness more than befor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order is established as much as before.